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곽향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곽향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박 석, 서상열, 윤영희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영실, 이종환,
이효원, 최민규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.55명으로 최하위인 지역으로,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, 과잉 경쟁,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,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산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난임 또한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,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지해야 하는 치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시술종류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, 남성 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전무하며,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난임치료 시술 공무원 및 배우자의 특별휴가 인정(안 제 24조 제9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7항(종전의 제16항) 본문 중 “제15항에”를 “제16항에”로, “제15항제1호”를 “제16항제1호”로 한다.

- ⑩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,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9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
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
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
수로 한다.

⑰ (생 략)

-----.

⑱ (현행 제17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(특별휴가)제10항을 변경·신설하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시술 시 동행을 위해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- 배우자 동행휴가의 경우, 통상적인 연가 대적업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인력 충원과 같은 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